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외장
람	

제1674호 2022. 5. 30.(월)

## 차 례

### 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— 1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————— 10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—— 12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 고시 ————— 15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1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————— 20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8호 「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22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2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0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503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열람·공고 ————— 47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

2022년 5월 30일

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72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2]

##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(제2조 관련)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합 계			857	
감사담당관	일반직	소계	12	
		5급	1	행정(개방형) 1
		6급	4	행정 3, 사회복지 1
		7급	7	행정 5, 시설 2
소통협력 담당관	일반직	소계	11	
		5급	1	행정·시설 1(개방형)
		6급	3	행정 3
		7급	5	행정 1, 전산 2, 사회복지 1, 시설 1
		8급	1	행정·전산 1
기획예산 담당관	일반직	소계	28	
		4급	1	행정·기술 1
		5급	1	행정·방송통신 1
		6급	9	행정 6, 세무 1, 방송통신 1, 전화상담운영 1
		7급	12	행정 11, 방송통신 1
		8급	2	행정 1, 방송통신 1
		9급	3	행정 1, 방송통신 2
미래기획단	일반직	소계	12	
		5급	1	행정·시설 1(개방형)
		6급	3	시설 2, 행정·시설 1
		7급	3	행정 1, 환경 1, 시설 1
		8급	3	시설 2, 행정·시설 1
		9급	2	시설 2
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	일반직	소계	10	
		5급	1	행정·녹지·환경·시설 1
		6급	3	행정 1, 행정·방송통신 1, 환경·시설 1
		7급	3	시설 2, 방송통신 1
		9급	3	행정 1, 시설 1, 방송통신 1

구 분	직 종	직 급	정 원	직 급 별 내 역
홍 보 정 책 담 당 관	일반직	소계	14	
		5급	1	행정 1
		6급	2	행정 1, 전산 1
		7급	6	행정 2, 전산 4
		8급	4	행정 2, 전산 2
		9급	1	행정 1
총 무 과		계	29	
	정무직	소계	1	
	일반직	소계	25	
		2급	1	행정 1
		4급	1	행정 1
		5급	2	행정·시설 1, 행정·사회복지·보건·시설 1
		6급	8	행정 7, 운전 1
		7급	5	행정 4, 행정·시설 1
		8급	7	행정 7
		9급	1	행정 1
		별정직	소계	3
	7급		1	일반비서 1
	8급		2	일반비서 2
공 동 체 협 치 과	일반직	소계	16	
		5급	1	행정 1
		6급	4	행정 4
		7급	4	행정 4
		8급	6	행정 6
		9급	1	행정 1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재 무 과	일반직	소계	22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5	행정 3, 운전 1, 시설 1
		7급	9	행정 5, 시설 2, 운전 1, 행정·시설 1
		8급	6	행정 4, 공업 2
		9급	1	행정 1
세 무 1 과	일반직	소계	29	
		5급	1	행정 1
		6급	10	세무 6, 행정·세무 4
		7급	10	세무 9, 행정·세무 1
		8급	4	행정 1, 세무 3
		9급	4	세무 2, 행정·세무 2
세 무 2 과	일반직	소계	37	
		5급	1	행정 1
		6급	11	세무 8, 행정·세무 3
		7급	9	세무 8, 행정·세무 1
		8급	4	세무 4
		9급	12	세무 11, 행정·세무 1
민 원 봉 사 과		계	23	
	일반직	소계	22	
		5급	1	행정 1
		6급	6	행정 5, 사무운영 1
		7급	3	행정 3
		8급	7	행정 7
		9급	5	행정 5
	연구직	소계	1	
연구사		1	기록연구사 1	
복 지 정 책 과	일반직	소계	41	
		4급	1	행정·기술 1
		5급	1	행정·사회복지 1
		6급	7	사회복지 4, 행정·사회복지 3
		7급	14	행정 3, 사회복지 10, 행정·사회복지 1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		8급	13	행정 1, 사회복지 10, 행정·사회복지 2
		9급	5	행정 3, 사회복지 2
노인복지과	일반직	소계	15	
		5급	1	행정·사회복지 1
		6급	5	행정 1, 사회복지 2, 행정·사회복지 2
		7급	5	행정 1, 사회복지 3, 행정·사회복지 1
		8급	3	사회복지 3
		9급	1	행정 1
장애인복지과	일반직	소계	20	
		5급	1	행정·사회복지 1
		6급	6	사회복지 4, 행정·사회복지 2
		7급	5	사회복지 5
		8급	3	사회복지 2, 사회복지·시설 1
		9급	5	사회복지 2, 행정·사회복지 3
교육혁신과	일반직	소계	21	
		5급	1	행정 1
		6급	5	행정 5
		7급	8	행정 6, 사회복지 2
		8급	3	행정 3
		9급	4	행정 4
가정보육과	일반직	소계	30	
		5급	1	행정·사회복지 1
		6급	7	행정 2, 사회복지 5
		7급	9	행정 3, 사회복지 6
		8급	10	행정 3, 사회복지 5, 시설 1, 행정·사회복지 1
		9급	3	행정 2, 사회복지 1
아동행복과	일반직	소계	26	
		5급	1	행정·사회복지 1
		6급	4	행정 1, 사회복지 2, 행정·사회복지 1
		7급	9	행정 2, 사회복지 6, 보건 1
		8급	9	행정 2, 사회복지 4, 행정·사회복지 3
		9급	3	행정 2, 행정 <sup>5</sup> 사회복지 1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문 화 관 광 체 육 과	일반직	소계	20	
		5급	1	행정 1
		6급	7	행정 6, 행정·시설 1
		7급	5	행정 4, 행정·시설 1
		8급	7	행정 6, 시설 1
클린도시과	일반직	소계	24	
		4급	1	행정·기술 1
		5급	1	행정·환경 1
		6급	5	환경 3, 행정·환경 1, 공업·환경 1
		7급	4	행정 1, 환경 3
		8급	8	공업 2, 환경 6
		9급	5	공업 1, 환경 4
환경관리과	일반직	소계	19	
		5급	1	행정·환경 1
		6급	3	환경 2, 행정·환경 1
		7급	3	환경 3
		8급	8	행정 1, 환경 7
		9급	4	환경 3, 행정·환경 1
기후에너지 정책과	일반직	소계	11	
		5급	1	행정·공업·환경 1 (개방형)
		6급	3	공업 1, 행정·공업·환경 2
		7급	4	공업 3, 환경 1
		8급	2	공업 1, 행정·공업 1
		9급	1	행정·환경 1
생태하천과	일반직	소계	22	
		5급	1	행정·환경·시설 1
		6급	7	행정 1, 공업 2, 시설 1, 운전 1, 보건·환경 1, 행정·녹지·환경·시설 1
		7급	7	행정 1, 환경 2, 시설 4
		8급	4	녹지 1, 보건 1, 시설 2
		9급	3	행정 1, 공업 1, 시설 1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안전 총괄과	일반직	소계	24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7	행정 2, 행정·시설 2, 행정·방송통신 1, 시설·방재안전 1, 행정·환경·시설 1
		7급	7	행정 2, 환경 1, 시설 1, 방재안전 1, 방송통신 2
		8급	6	공업 1, 시설 2, 방재안전 1, 방송통신 2
		9급	3	행정 1, 시설 1, 방재안전 1
자원순환과	일반직	소계	36	
		5급	1	행정·보건·환경 1
		6급	10	행정 3, 환경 1, 행정·환경 3, 행정·시설 1, 공업·보건 1, 행정·보건·환경 1
		7급	10	행정 6, 보건 1, 환경 1, 행정·환경 1, 보건·환경 1
		8급	9	행정 3, 환경 4, 보건·환경 2
		9급	6	행정 4, 환경 2
공원녹지과	일반직	소계	25	
		5급	1	행정·녹지·시설 1
		6급	7	녹지 5, 행정·녹지 1, 행정·방송통신 1
		7급	7	녹지 7
		8급	6	녹지 6
		9급	4	녹지 4
경제 정책과	일반직	소계	25	
		4급	1	행정·기술 1
		5급	1	행정·농업·수의 1
		6급	6	행정 4, 농업 1, 수의 1
		7급	11	행정 5, 수의 3, 해양수산 1, 행정·농업 1, 농업·수의 1
		8급	5	행정 1, 농업 1, 시설 2, 행정·농업 1
		9급	1	농업 1
기업지원 일자리과	일반직	소계	21	
		5급	1	행정·공업 1
		6급	7	행정 3, 공업 2, 행정·공업 1, 행정·공업·시설 1
		7급	6	행정 3, 공업 1, 시설 1, 기계운영 1
		8급	3	행정 1, 공업 2
		9급	4	행정 2, 공업 2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식 품 산 업 위 생 과	일반직	소계	23	
		5급	1	행정·보건 1
		6급	7	보건 5, 행정·보건 2
		7급	9	보건 9
		8급	4	보건 3, 공업·보건 1
		9급	2	보건 1, 행정·보건 1
교 통 정 책 과	일반직	소계	18	
		5급	1	행정·공업·시설 1
		6급	5	행정 3, 시설 1, 행정·공업 1
		7급	4	행정 3, 공업 1
		8급	5	행정 3, 공업 1, 시설 1
		9급	3	행정 2, 시설 1
주 차 관 리 과	일반직	소계	15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5	행정 3, 세무 1, 시설 1
		7급	3	행정 2, 시설 1
		8급	5	행정 4, 공업 1
		9급	1	행정 1
차 량 민 원 과	일반직	소계	23	
		5급	1	행정·공업 1
		6급	4	행정 2, 행정·세무 2
		7급	6	행정 4, 세무 1, 공업 1
		8급	9	행정 8, 세무 1
		9급	3	행정 2, 공업 1
도 로 과	일반직	소계	29	
		4급	1	기술 1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8	행정 2, 공업 2, 시설 3, 행정·시설 1
		7급	7	행정 2, 공업 2, 시설 3
		8급	11	공업 1, 시설 7, 기계운영 1, 행정·시설 2
		9급	1	공업 1

구 분	직 종	직급	정원	직 급 별 내 역
도시계획과	일반직	소계	25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6	행정 1, 시설 2, 행정·시설 2, 녹지·시설 1
		7급	11	행정 3, 시설 8
		8급	5	행정 2, 시설 3
		9급	2	시설 2
건축과	일반직	소계	30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5	행정 1, 시설 4
		7급	4	시설 4
		8급	12	행정 1, 공업 3, 시설 8
		9급	8	시설 7, 행정·시설 1
주택과	일반직	소계	19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5	시설 3, 행정·사회복지 1, 행정·시설 1
		7급	5	사회복지 1, 시설 4
		8급	5	시설 4, 행정·시설 1
		9급	3	사회복지 1, 시설 2
도시재생과	일반직	소계	25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7	행정 1, 시설 2, 사무운영 1, 행정·시설 3
		7급	7	행정 1, 시설 6
		8급	5	행정 2, 시설 3
		9급	5	행정 1, 시설 4
토지정보과	일반직	소계	27	
		5급	1	행정·시설 1
		6급	6	시설 5, 행정·시설 1
		7급	12	행정 1, 시설 10, 행정·시설 1
		8급	7	행정 3, 시설 3, 행정·시설 1
		9급	1	시설 1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7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
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5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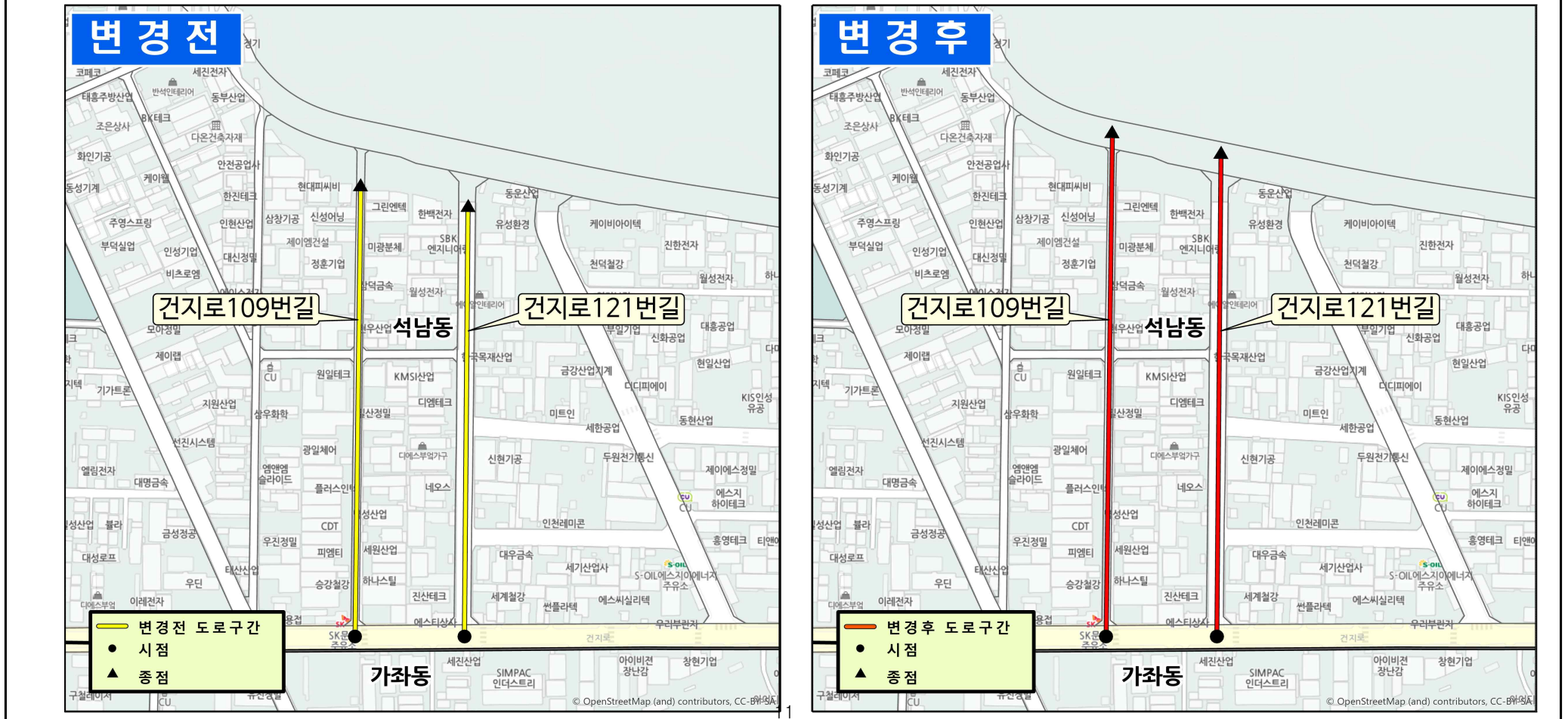
1. 고시일 : 2022. 5. 30.
2. 고시방법 : 홈페이지 및 구보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(붙임 참조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(☎032-560-4830)  
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도로구간 변경 조서

연번	내역	도로유형	도로명	시점		종점		길이(m)	폭(m)	기초간격(m)	기초번호		관할 행정구역	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(효력 발생일)	도로구간의 변경 사유
				읍면동	지번	읍면동	지번				시작	끝			
1	기존	번길	건지로109번길	석남동	223-179	석남동	산139-14	560	10	20	1	56	석남2동	2022. 5. 30.	도로구간 연장공사
	변경			석남동	223-179	석남동	257-2	725	10	20	1	72			
2	기존	번길	건지로121번길	석남동	223-179	석남동	265-2	533	20	20	1	52	석남2동	2022. 5. 30.	도로구간 연장공사
	변경			석남동	223-179	석남동	257-4	612	20	20	1	60			

### ○ 도로구간 변경 전 · 후 도면 (건지로109번길)

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74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5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○ 부여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75 외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폐지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5.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2-5-30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5-147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75 (청라동,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2단지)	20120330	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?? 이 있음을 무라	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2단지
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5-145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85 (청라동,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1단지)	20120330	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?? 이 있음을 무라	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1단지
3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2-6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43 (불로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,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8-25, 산104-3, 188-19, 188-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507번길 50 (왕길동)	200812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6-6	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50 (심곡동)	20090922	심곡동의 동명 불 따서 명명	
6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63 (당하동)	20200420	신도시와 구도심, 환경과 사람의 이음에서 착안.	검단랜드원서티 (검단신도시 근생1-1-2,3)
7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8-7	인천광역시 서구 보름6로 16 (오류동)	20121025	보름로에서 여섯번째 분기되는 도로	도남엔지니어링 엘리베이터 R&D 센터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2-5-30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견지로95번길 9 (석남동)	건축과-20821(2022.05.19.)호에 의거	20090922	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(주)우던
2	인천광역시 서구 견지로311번길 29 (석남동)	건축과-21022(2022.05.20.)호에 의거	20090922	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75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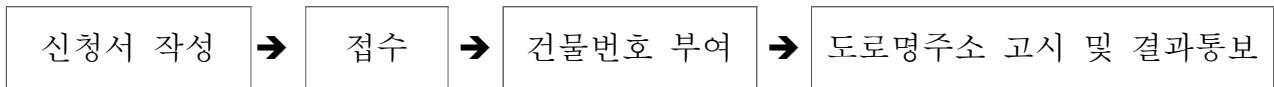
도로명주소법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5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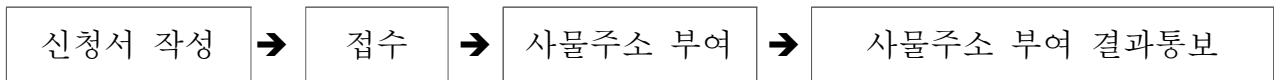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시일 : 2022. 5. 30.
2. 고시방법 : 구보, 홈페이지
3. 고시내용 :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(붙임 조서와 같음)
4.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 신청에 관한 사항

□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신청 절차



□ 사물주소 신청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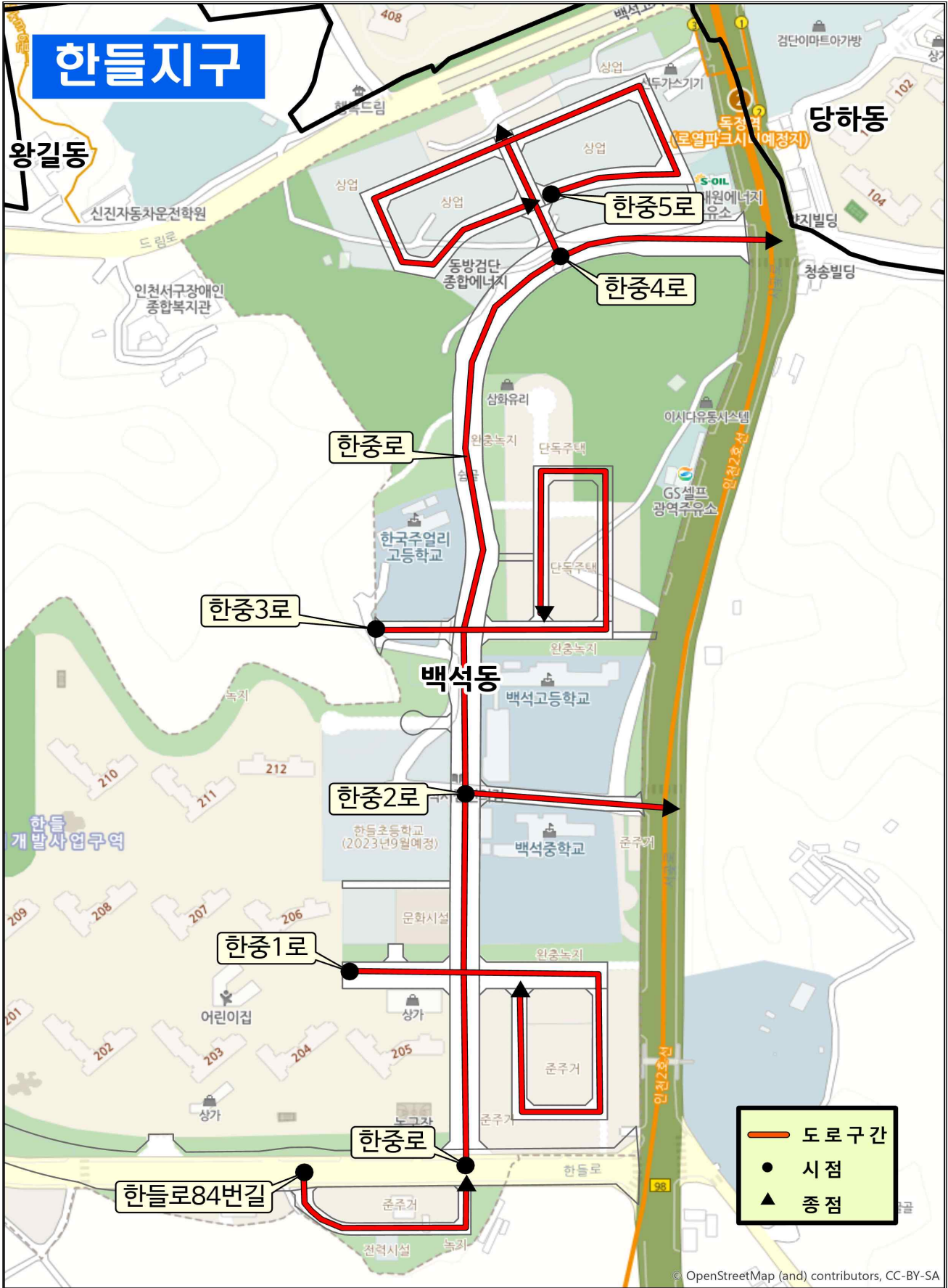
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(☎032-560-48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

연번	도로구분	도로명	기 점		종 점		제 원		기초간격(m)	관할 행정구역	도로명 부여사유
			읍면동	지번	읍면동	지번	길이(m)	폭(m)			
1	로	한중로	백석동	산51-1	백석동	산26-15	962	20	20	검암경서동	한들지구 중심을 지나는 도로
2	로	한중1로	백석동	100-1	백석동	60	481	12	20	검암경서동	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첫번째 도로
3	로	한중2로	백석동	62-5	백석동	산21-3	163	12	20	검암경서동	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두번째 도로
4	로	한중3로	백석동	산40-13	백석동	68-1	489	12	20	검암경서동	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세번째 도로
5	로	한중4로	백석동	76-19	백석동	80-18	111	16	20	검암경서동	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네번째 도로
6	로	한중5로	백석동	77-2	백석동	77-1	601	16	20	검암경서동	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다섯번째 도로
7	로	용해로	불로동	48-12	불로동	849	397	16	20	불로대곡동	용해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
8	길	한들로84번길	백석동	101-7	백석동	산51-1	209	10	20	검암경서동	한들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8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9	길	독정로43번길	당하동	789	당하동	820-2	158	11	20	당하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3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0	길	독정로44번길	당하동	789	당하동	800-6	217	11	20	당하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1	길	독정로58번길	당하동	807-1	당하동	748-5	762	15	20	당하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58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2	길	독정로78번길	당하동	산192-1	당하동	772-7	254	16	20	당하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78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3	길	독정로125번길	마전동	산203-1	당하동	산203-1	245	16	20	당하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,25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4	길	독정로145번길	마전동	524-3	마전동	545-8	195	12	20	당하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,45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5	길	독정로324번길	불로동	489-9	불로동	826	422	16	20	불로대곡동	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3,2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6	길	로봇랜드로396번길	청라동	12-21	청라동	12-20	637	20	20	청라3동	로봇랜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3,96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7	길	서곶로96번길	가정동	산78-4	가정동	산21-20	398	10	20	가정2동	서곶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96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18	길	봉오대로268번안길	가정동	538-2	가정동	산21-45	589	15	20	가정2동	봉오대로268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



○ 독정로43번길 등

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951호

##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-92(2019. 5. 13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석남동 491-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(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(관계 서류의 공람)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5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I. 사업시행계획(변경 내용 : 공사기간)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-3번지 외 7필지

나. 구역면적 : 15,244.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천휘

나.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, 3층

#### 4. 사업시행 내용 및 규모

가. 내 용 : 공동주택(아파트), 업무시설(오피스텔) 및 정비기반시설  
(도로, 주차장) 설치

나. 건축계획

- 1) 대지면적 : 13,028.2m<sup>2</sup>
- 2) 건축면적 : 2,894.0782m<sup>2</sup>(건폐율 : 22.214%)
- 3) 연 면 적 : 84,786.9659m<sup>2</sup>(용적률 : 446.1364%)
- 4) 층 수 : 지하4층, 지상29층
- 5)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4개동 511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,  
업무시설(오피스텔) 1개동 134호

다. 정비기반시설 계획

- 1) 도로(1,847.7m<sup>2</sup>), 주차장(368.1m<sup>2</sup>) 조성 후 기부채납

라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마. 변경내용

- 1) 공사기간 : 당초 2021. 11. 22. ~ 2024. 07. 21. (32개월)  
변경 2021. 11. 22. ~ 2024. 09. 21. (34개월)

II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III.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60-4592)  
(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, 4층)

#### IV. 의견제출

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과 또는 석남3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958호

## 「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2022. 5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상의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 규정이 없어 마을 조합 설립 후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.(안 제12조 신설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도시재생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지수 (전화번호 032-560-3014, 팩스번호 032-560-2749, 전자메일 [iubi0729@korea.kr](mailto:iubi0729@korea.kr)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 - 나.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연락처번호
- ※ 이 조례(규칙)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 
(홈페이지 주소: <https://www.elis.go.kr>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- 다. 관계법령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)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.

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
  2. 주민의 건강, 안전 및 이익 보장
  3.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
  4. 교육, 안전, 복지, 의료, 환경,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
  5.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
-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
2.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
3.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

4.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
5.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
6.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2조(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)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</u></li> <li><u>2. 주민의 건강, 안전 및 이익 보장</u></li> <li><u>3.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</u></li> <li><u>4. 교육, 안전, 복지, 의료, 환경,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</u></li> </ol> <p><u>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</u></p>

<p><u>제12조 ~ 제15조 (생략)</u></p>	<p>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</u></li> <li>2. <u>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</u></li> <li>3. <u>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</u></li> <li>4. <u>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</u></li> <li>5. <u>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</u></li> </ol> <p><u>제13조 ~ 제16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)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

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
2.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979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. 5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조례명 :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

#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, 2019.5.9.) 개정 및 인천시·구 합동 「탈석탄 금고 선언」(2020.12.14.)에 따라 구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,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하고자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,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

#### 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0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세무1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팩스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 
[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560-4192 / FAX 560-2722]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5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.

##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, 2019.5.9.) 개정 및 인천시·구 합동 「탈석탄 금고 선언」(2020.12.14.)에 따라 구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,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하고자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(안 별표 1의 3)
- 나.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(안 별표 1의 6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: 별첨
- 나. 예산 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, 가정보육과 합의
- 라. 기 타
  - 1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기타 사항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지정기준)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정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기타 사항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[별표 1]

##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 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26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- 국외평가기관(4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총자본비율 (안정성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7점)로 평가 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) 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) 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)에 따름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8   18  (6)  (5)  (5)  (2)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20	
	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.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. 정기에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	7 4 6 1 2	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	21	
	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 설치 대수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.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	7  5 6 3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24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 등) 구축·운영능력	6 8 8 2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	7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 ※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, “구와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	5 2	
6. 기타사항		2	
	가. 탄소중립 기여도 -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,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,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	2	

[별표 2]

##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(제3조제2항 관련)

### 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  
 다만, 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)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.

### 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#### 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26점)

#####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8점)

○ 평가기준

- 공인된 국내·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

○ 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(가장 최근자료 기준)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(18점)**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 - (1) 총자본비율 (안정성, 6점)
  - (2)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5점)
  - (3)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 5점)
  - (4) 대손충당금 적립율 (건전성, 2점)

**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(20점)****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(7점)**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 (4점)**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다. 공금예금 적용금리 (6점)**

-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(1점)**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마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(2점)**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### 3. 주민이용의 편의성 (21점)

#### 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 설치 대수 (7점)

-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,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#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(5점)

-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#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(6점)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# 라.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(3점)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4점)

####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(6점)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#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(8점)

-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(8점)**

-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 등) 구축·운영능력 (2점)**

-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·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(7점)****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(5점)**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**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 (2점)**

-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**6. 기타사항 (2점)****가. 탄소중립 기여도 (2점)**

-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,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,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**「지방회계법」**

**제38조(금고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**

**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**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>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  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  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 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#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(별지 제3호서식)를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의 심사기준 조항 반영(별지 제3호서식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별첨

나. 예산 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, 가정보육과 합의

라. 기 타

1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3호서식)

##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

금융기관명 :

심사기준	위원별								합계	평균
총 계										
<b>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</b>									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									
- 국외평가기관										
- 국내평가기관									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									
- 총자본비율(안정성)								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									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									
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										
<b>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</b>								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									
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									
다. 공공예금 적용금리										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									
마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										
<b>3. 주민이용의 편의성</b>										
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 설치 대수									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								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									
라.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										
<b>4. 금고업무 관리능력</b>										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								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								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									
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 등)구축 운영능력										
<b>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</b>										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									
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										
<b>6. 기타사항</b>										
가. 탄소중립 기여도									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「지방회계법」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>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  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  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  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  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  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 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## 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

2. 성명(단체명/대표자)

주소

3. 의견

4. 기타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비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980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503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열람·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-244호(2019.12.23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 중로1-503호선, 사업명: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(중로1-503호선) 개설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(도시계획과 ☎560-4763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5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변경사유

- 지장물 이설(전주, 통신주 등)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

### 2. 사업시행지(변경 없음)

-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-1번지 일원

### 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503호선)
- 명칭: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(중로1-503호선) 개설공사

## 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(변경 없음)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연장(m)				면적 (m <sup>2</sup> )
				결정	금회	결정	기시행	금회	잔여	
도로	소로	1	503	20 (20~24)	20 (20~24)	673	-	59	614	1,926

##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 없음)

- 성명: 한국토지주택공사
- 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## 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(변경)

- 기정: 실시계획 인가일 ~ 2022. 06. 30.
- 변경: 실시계획 인가일 ~ 2022. 12. 31.

##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(변경 없음)

- 따로 붙임

## 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□ 사업명 :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(중로1-503호선) 개설공사

구분					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
연번	구분	법정동	지번	지목	공부	편입	소유자	소유자주소	관계인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
1	변경 없음	백석동	11-5	전	1,051	1,051	한국토지 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		
2	변경 없음	백석동	11-6	전	531	531	한국토지 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		
3	변경 없음	백석동	10-1	전	106	106	한국토지 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		
4	변경 없음	백석동	12-13	전	127	127	한국토지 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		
5	변경 없음	백석동	13-1	도로	1	1	인천광역시				
6	변경 없음	백석동	226-17	도로	110	110	국 (국토교통부)				

# 사업개요

## 가.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- 사업대상지는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의 지구외도로로 인천2호선 독정역 방향에서 대상지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검단택지지구내 종로1-503호선과 지구외 대로3-10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함

## 나. 사업의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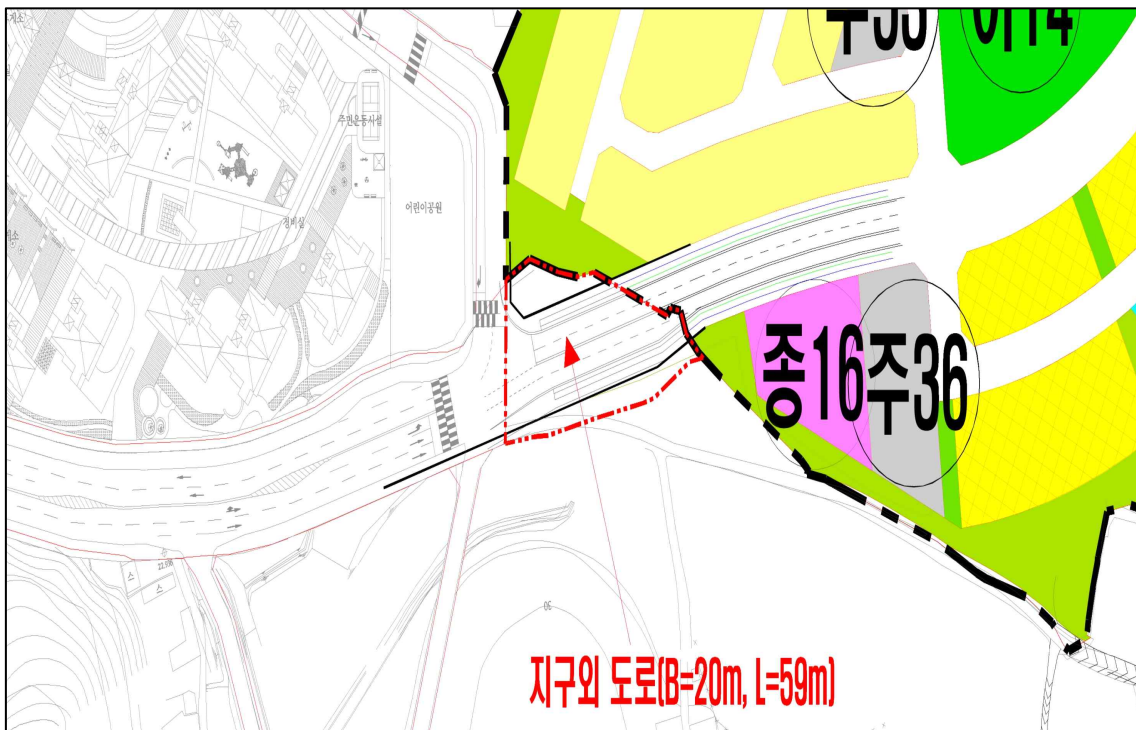
### 1) 공간적 범위

-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-1번지 일원
- 도로 제원 : 전체 - L=673m, A=13,705㎡  
금회시행구간 - L=59m A=1,926㎡

### 2) 시간적 범위

- 기준년도 : 2019년
- 목표연도 : 2022년

【 위치도 】



## 다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
- 사업의 명칭 :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(중로 1-503호선) 개설공사

##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시행자명칭	대표자	주소
한국토지주택공사	-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## 마.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공예정 : 2020년 7월
- (기정) 준공예정 : 2022년 6월
- (변경) 준공예정 : 2022년 12월

## 바. 자금조달계획

### 1. 사업비

- 사업비 : 824백만원(보상비 729백만원, 공사비 95백만원)
- 보상비는 공시지가 2배 적용
- 공사비는 「2019 LH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」 적용

구분		단위공사비 (원/㎡)	공사비(원)	비고
토공	면적별 단위 공사비	4,550	8,795,150	
	부족토 운반 개략 공사비	9,058	36,232,000	부족토 4,000㎡
	개략공사비 소계	-	45,027,150	
포장공		14,010	27,081,330	
부대비		-	14,421,696	공종별 공사비합의 20%
소계		-	86,530,176	
부가가치세		-	8,653,018	10%
총계		-	95,000,000	십만단위미만 절사

### 2. 재원조달

- 사업시행자 자체자금